

공연시설의 정당한 편의 제공 실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alysis of Reasonable accommodations at Theater

김인순 Kim, In-soon* | 이규일 Lee, Kyoo-il** | 안성준 An, Sung-Joon***

Abstract

The Act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and Rights Restriction was enacted in 2008 states that all services including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should be fair and easily accessible for disabled.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how to improve the facilities and services for the disabled in Theater and provide complementary guidelines for amenities designed for people with disabled. The conclusions identified through this study are as follows: 1) It should be installed pedestrian safe passage so that visitors could access from the entrance of the ground to the seat in the theater. 2) Disabled seats install in a position to Emergency evacu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it is recommended that general seats are placed side by side with Disabled seats. 3) It is analyzed services for the visually impaired and hearing impaired are very poor. Therefore assistive devices and human services should be provided to the visually impaired and hearing impaired. 4) People with disabilities can participate in the show as the performers, so it should be provided reasonable accommodations such as access to the stage.

키워드 공연시설, 정당한 편의, 편의시설, 장애인

Keyword Performing arts facilities, Reasonable accommodations, Convenient facilities, The disabled.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가의 사회경제적 수준 향상과 더불어 개인의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장애인을 포함한 시민의 문화욕구도 증대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문화활동 참여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장애인의 신체적 조건이나 문화분야에 대한 장애인의 낮은 관심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문화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은 높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낮은 것¹⁾은 문화활동 참여를 둘러싼 환경 조건이 장애인의 접근에 용이하게 조성되어 있지 못함을 반

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 또한 문화시설의 장애인편의 시설 적정설치율이 56.7%³⁾로 조사된 결과를 통해서도 문화시설의 장애인 이용가능 수준이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교육, 고용과 더불어 문화 분야에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물리적 편의와 서비스 측면의 편의 모두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시설 중 공연시설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영역에 포함되는 편의시설과 서비스 측면의 편의제공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여 분석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공연문화시설의 정당한 편의제공 현황분석을 위해 27개 공연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실태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공학박사

** (주)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 공학박사

*** 한국장애인개발원, 공학박사수료

※ 본 연구는 2011년도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편의시설 매뉴얼(문화시설편)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자료11-24)

1)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회적 취약계층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2005)에서 문화활동율이 비장애인은 65.8%, 장애인은 18.1%로, 참여의향률은 비장애인이 73.8%, 장애인은 38.0%로 조사되었다.

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2010, p7

3) 한국장애인개발원, 200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09.

먼저 공연시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연구에 대해 고찰하였다.

둘째로,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연시설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범위에 관해 검토하였다.

셋째로, 물리적 정당한 편의제공 범위에 포함되는 편의시설에 대한 현황과 더불어 서비스 측면의 비물리적 정당한 편의제공 현황을 조사하여 이를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관련시설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영역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공연문화시설 관련연구 고찰

본 연구의 대상범위인 공연시설의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한 선행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지체장애인의 접근성의 관점에서 기존에 건립되어진 문화회관을 사례로 지체장애인의 시설 접근과 이용 그리고 피난상황에 대한 동선분석 연구⁴⁾, 공연시설의 단면형태 및 객석, 무대 구성과의 상관관계에 따른 장애인 객석 공간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⁵⁾, 유니버설 디자인의 4가지 원리인 접근성, 지원성, 수용성, 안전성의 항목을 중심으로 편의증진법의 시행규칙을 토대로 평가항목을 개발하여 지역문화시설을 평가·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한 연구⁶⁾ 등이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공연시설 등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공연공간의 동선계획, 공간구성 및 시설형태 등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시설적 측면의 문제점을 모색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편의시설 및 서비스 영역까지를 포함하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관점에서 현황을 분석한 연구는 전무하였다.

2.2 관련법규 검토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시설을 비장애인들과 차별없이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을 규정한 국내의 관련법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장애인복지법, 예술문화진흥법 등이 있다.

4) 이수용·박동준·오세규, 지역문화시설의 지체장애인 동선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집 11권 2호, 2205, pp73-81

5) 김영은·이건하, 공연시설에서의 장애인 객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6권 4호, 2007, pp72-80

6) 오찬욱, 지역문화시설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성 평가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9권 2호, 2010, pp3-14

공연시설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공연시설의 세부적인 시설 및 서비스 영역에 적용 가능한 법적 기준인 편의증진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기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차별을 예방하고 금지하기 위하여 2007년 4월에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에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남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고려하고, 지체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 등과 같은 장애유형과 중증장애인과 같은 장애정도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인 제반수단과 물적인 제반수단 그리고 이에 따른 모든 조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당한 편의는 편의시설 뿐만 아니라 인적 서비스와 수단 그리고 조치까지 포함된 넓은 의미라 할 수 있다.⁷⁾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은 동법 제3절 제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부분의 제18조 제1항에 '시설물 및 이동 등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주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12조에서는 편의증진법 대상시설별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예술사업자의 경우 단계적 대상 시설의 범위 확대⁸⁾를 통하여 장애인들에 문화예술 활동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꾀하고 있다. 또한 제24조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차별금지에 관하여는 '문화 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7) 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문화체육관광부, 2010

8)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5조제1항 관련)

1. 2010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문화재단,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나.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 대학박물관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국·공립 미술관, 국·공립 대학미술관

2. 2012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민간 종합공연장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사립 대학박물관, 사립 대학미술관

3. 2015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민간 일반공연장나. 「문화예술진흥법」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조각공원,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지방문화원

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중 사립박물관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미술관 중 사립미술관

편의증진법은 1997년 4월에 제정된 법률로서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등 공공시설 등을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이다. 동법 시행령 제 4조 관련[별표2]에서는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크게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로 구분하고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설치사항을 ‘의무’와 ‘권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문화집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를 다음 [표 1]과 같이 구성하고 있다.

[표 1] 공연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종류

편의시설	매개 시설			내부 시설			위생시설			안내 시설			기타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이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시설	경보 및 피난시설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전수대·잔업대	대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실
대상시설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문화 집회 시설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전시장, 동·식물원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3. 공연문화시설의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분석

3.1 분석의 개요

공연문화시설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 조사를 위한 조사대상 공연시설은 서울에 소재한 시설로 한정하였으며, 설립 및 운영의 주체에 따라 국·공립, 사립, 대학 등 다양하게 선정하였다. 또한 시설의 규모도 다양하게 고려하여 총 27개소를 선정하였다.

실태조사의 개요는 [표 2]와 같다. 조사는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으며 조사기간은 총 26일에 걸쳐 [표 2] 실태조사의 개요

조사 구분	조사 대상	조사내용	조사 시기
예비 조사	공연장 (1개소)	• 문화시설 유형별 편의제공 현황 • 실태조사 체크리스트 점검항목 개발 및 보완 • 조사원 교육	2011.8.16
본 조사	공연장 (27개소)	• (시설 측면) 편의시설의 종류별 설치현황 • (서비스 측면)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	2011.8.22 ~ 2011.9.16

이루어졌다. 예비조사의 경우 공연장 1개소를 대상으로 유형별 편의제공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함으로써 대상시설 체크리스트의 점검항목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개발된 조사용 체크리스트에 의해 공연장 27

개소를 본조사 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편의시설의 종류별 설치현황 및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실태조사의 내용은 시설 영역과 서비스 영역에서의 점검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시설 영역에서는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의 종류에 의하여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등 5종류로 대분류하고, 각 종류별 편의시설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총 18종류의 중분류, 공연장 87종류의 점검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점검항목 중 ‘일반출입구’와 ‘복도’의 경우 장애인공연장 이용실 및 동선을 고려하여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1.1 주출입구 접근로				
번호	내용	적정	미흡	미설치
1.1.1	계근로의 바닥재료 : 미끄럽지 않은 재료	적정	일부미흡	부적정
1.1.2	계근로의 바닥형태 : 평탄한 형태	적정	일부미흡	부적정
1.1.3	계근로 보도블록 등 이음새의 틈이 1cm 이상 벌어지지 않았는가?	적정	일부미흡	부적정
1.1.4	계근로중 배수구 등의 덮개의 높이는 2cm 이하?	적정	일부미흡	부적정
1.1.5	계근로중 배수구 등의 덮개의 구멍 간격은 2cm 이하?	적정	일부미흡	부적정
1.1.6	계근로 전체구간의 유효폭은 1.2m 이상?	적정	일부미흡	부적정
1.1.7	계근로 전체구간의 기울기는 1/12 이하?	적정	일부미흡	부적정
1.1.8	차도와의 분리위한 공간(경계석, 울타리 등) 설치?	적정	일부미흡	부적정
1.1.9	계근로상에 보행 장애물은 없는가?	적정	일부미흡	부적정

[그림 1] 공연문화시설 실태조사표의 예시

또한 서비스 영역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법적기준을 토대로 ‘인적서비스’, ‘공연장의 정당한 편의’, ‘전시장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중심으로 각 8종류의 점검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시설 및 서비스 영역의 실태조사표 구성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실태조사표 구성

구분	대분류	중분류	점검항목수
시설 영역	1. 매개시설	1.1 주출입구 접근로	9
		1.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6
		1.3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1
	2. 내부시설	2.1 주출입구(문)	4
		2.2 일반출입구(문)	7
		2.3 복도	8
		2.4 계단	6
		2.5 경사로	5
		2.6 승강기	6
	3. 위생시설	3.1 대변기	13
		3.2 소변기	2
		3.3 세면대	2
	4. 안내시설	4.1 점자블록	2
4.2 유도 및 안내설비		2	
4.3 경보 및 피난설비		2	
5. 기타시설	5.1 관람석 또는 열람석	7	
	5.2 접수대	2	
	5.3 매표소·판매기·음료대	3	
서비스 영역	6. 정당한 편의	6.1 인적서비스	2
		6.2 정당한 편의제공(기타 서비스)	6
계			95

3.2 시설 영역의 정당한 편의제공(편의시설 설치)현황 분석

1) 매개시설

문화시설 중 27개의 공연장을 대상으로 매개시설에서의 편의시설 설치실태를 조사한 결과, 매개시설의 항목별 적정설치율⁹⁾은 주출입구 접근로 71.9%, 장애인전용주차구역 51.3%,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44.4%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음 [표 4]와 같다.

주출입구 접근로의 적정설치율이 71.9%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설치율¹⁰⁾또한 82%로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나, 타 항목에 비해 비교적 편의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져 접근로 상에서 장애인등의 관람자 초기동선이 단절되는 사례는 많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주차구역에서는 주차후 주출입구까지 이동하는 보행안전통로의 확보 항목에 대한 적정설치율이 가장 낮은 8%로 나타나 시설의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구역의 크기 항목도 적정하게 설치된 시설의 비율이 전체의 44%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항목의 적정설치율도 44.4%로 매우 낮게 평가되었으며, 설치율 70.4%와 26.0%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몇몇 시설이 높이차이를 제거하려는 노력을 보였으나 공연장 주출입 경사로 등이 부적절하게 설치되어 장애인 등의 건축물 이용에 불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공연장의 매개시설 설치율

구분	전체 시설 수	설치 수	적정 설치 수	설치율 (%)	적정 설치율 (%)	
1.1 접근로	바닥마감 및 형태	27	26	20	96.3	74.1
	이음새 틈	27	23	18	85.2	66.7
	배수구 덮개 높이	14	13	12	92.9	85.7
	덮개 구멍간격	14	8	7	57.1	50.0
	접근로 단차	27	19	16	70.4	59.3
	접근로 유효폭	27	26	26	96.3	96.3
	접근로 기울기	27	14	14	51.9	51.9
	차도경계 공작물	27	24	21	88.9	77.8
	보행장애물 제거	27	25	22	92.6	81.5
소계	217	178	156	82.0	71.9	
1.2 주차 구역	출입구와 인접	25	17	16	68.0	64.0
	안전통행로 확보	25	6	2	24.0	8.0
	법정주차대수 확보	25	16	16	64.0	64.0
	주차구역 크기	25	12	11	48.0	44.0
	바닥안내표시	25	21	19	84.0	76.0
	입식안내표지	25	15	13	60.0	52.0
소계	150	87	77	58.0	51.3	
1.3 단차제거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27	19	12	70.4	44.4
	소계	27	19	12	70.4	44.4
총계	394	284	245	72.1	62.2	

범례 : ■ 저득점(50%이하), □ 고득점(90%이상) (이하표 동일)

9) 산출식: 적정설치율(%) = 적정설치수/전체시설수 × 100

10) 산출식: (단순)설치율(%) = 설치수(적정설치수+미흡설치수)/전체시설수 × 100



(S시설)높이차이가 제거되지 않은 주출입구



(H시설)주차구역의 안전통행로 미확보

[그림 2] 공연장의 매개시설 주요현황

2) 내부시설

내부시설의 항목별 적정설치율은 승강기 76.8%, 주출입구 72.2%, 복도 72.0%, 일반출입구 65.7%, 계단 40.6%, 경사로 40.0%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음 [표 5]와 같다.

승강기의 적정설치율이 76.8%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설치율 또한 81.9%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반면 공연장 내에 장애인등이 이용가능한 계단 및 경사로가 미설치되거나 적절하게 설치되지 않아 건축물 수직이동이 승강기로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일반출입구 및 복도에서의 관람객이용실과 공연자이용실의 항목을 비교하여 본 결과 공연자이용실 항목의 적정설치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장애인공연자에 대한 편의제공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공연장의 내부시설 설치율

구분	전체 시설 수	설치 수	적정 설치 수	설치율 (%)	적정 설치율 (%)	
주출입구	단차	27	24	24	88.9	88.9
	전·후면 점형블록	27	14	11	51.9	40.7
	전·후면 유효거리	27	24	23	88.9	85.2
	손잡이 위치	27	21	20	77.8	74.1
	소계	108	83	78	76.9	72.2
	일반출입구	단차	27	24	24	88.9
전·후면 유효거리		27	24	22	88.9	81.5
손잡이 위치		27	23	21	85.2	77.8
(공연자실)단차		25	20	19	80.0	76.0
(공연자실)점형블록		25	0	0	0.0	0.0
(공연자실)유효거리		25	20	19	80.0	76.0
(공연자실)손잡이위치	25	17	14	68.0	56.0	
소계	181	128	119	70.7	65.7	
복도	유효폭	27	27	27	100	100
	바닥재질	27	6	4	22.2	14.8
	단차제거	27	25	25	92.6	92.6
	통로상부 유효높이	27	27	26	100	96.3
	(공연자동선)유효폭	23	21	19	91.3	82.6
	(공연자동선)바닥재질	23	11	8	47.8	34.8
	(공연자동선)단차제거	23	15	13	65.2	56.5
	(공연자동선)유효높이	23	23	22	100	95.7
소계	200	155	144	77.5	72.0	
계단	유효폭	26	26	26	100	100
	디딤판·철타너비	26	26	24	100	92.3
	손잡이 굵기·높이	25	8	5	32.0	20.0

계단	수평손잡이 연장	26	3	1	11.5	3.8
	수평손잡이점자표기	26	4	4	15.4	15.4
	점형블록	26	7	3	26.9	11.5
	소계	155	74	63	47.7	40.6
경사로	유효폭	2	2	2	100.0	100.0
	휴식참	2	1	1	50.0	50.0
	기울기	2	0	0	0.0	0.0
	바닥마감	2	1	1	50.0	50.0
	손잡이 굵기·높이	2	1	0	50.0	0.0
	소계	10	5	4	50.0	40.0
승강기	전면 활동공간	23	23	23	100	100
	유효바닥면적	23	20	19	87.0	82.6
	휠체어 조작반 높이	23	13	11	56.5	47.8
	조작반점자표기	23	21	21	91.3	91.3
	점형블록	23	17	15	73.9	65.2
	음향·음성안내	23	19	17	82.6	73.9
	소계	138	113	106	81.9	76.8
총계	792	558	514	70.5	64.9	

3) 위생시설

위생시설의 항목별 설치율은 다음 [표 6]과 같다. 위생시설에서의 적정설치율은 대변기 66.8%, 소변기 56.3%, 세면대 40.7%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변기의 적정설치율이 타 항목에 비해 가장 높은 적정설치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대변기의 경우, 적정설치율이 타 항목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입구에 점자블록 및 점자표지판을 미부착하거나 부적정하게 부착 또는 회전식 수평손잡이를 미설치하 [표 6] 공연장의 위생시설 설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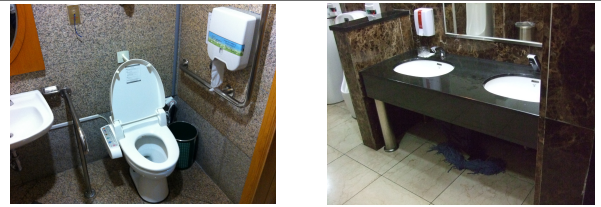
구분	전체 시설 수	설치 수	적정 설치 수	설치율 (%)	적정 설치율 (%)	
대변기	남·여 구분설치	26	20	20	76.9	76.9
	사용여부 시각설비	25	17	15	68.0	60.0
	연결통로	26	23	16	88.5	61.5
	바닥단차	26	24	24	92.3	92.3
	바닥재질	26	19	12	73.1	46.2
	점자블록·점자표지판	26	13	7	50.0	26.9
	대변기칸막이출입문	26	21	21	80.8	80.8
	통과유효폭	26	25	25	96.2	96.2
	유효바닥면적	26	20	19	76.9	73.1
	수평손잡이높이	26	22	20	84.6	76.9
	회전식 수평손잡이	26	13	11	50.0	42.3
	수직손잡이길이	26	15	13	57.7	50.0
	대변기세정장치	26	24	22	92.3	84.6
	소계	337	256	225	76.0	66.8
소변기	수평손잡이높이·길이	24	16	15	66.7	62.5
	수직손잡이높이·길이	24	14	12	58.3	50.0
	소계	48	30	27	62.5	56.3
세면대	상·하단높이,하부깊이	27	18	11	66.7	40.7
	수도꼭지	27	25	11	92.6	40.7
	소계	54	43	22	79.6	40.7
총계	439	329	274	74.9	62.4	

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 장애인들의 공연장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S시설의 경우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화장실이 전무하여 사실상 장애인들의 공연장 이용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세면대의 경우, 타 항목에 비해 가장 낮은 40.7%의 적정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설치율이 가장 높은 79.6%를 나타내고 있어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이 약 40.0%정도의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설치는 되어 있으나 부적정하게 설치된 사례가 많아 세면대의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추가적인 확충 및 개선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H시설) 회전식 수평손잡이의 미설치

(A시설)세면대 높이 및 하부깊이 부적정

[그림 3] 공연장의 위생시설 주요현황

4) 안내시설

안내시설의 항목별 적정설치율은 점자블록 29.6%, 유도 및 안내설비 17.3%, 경보 및 피난설비 9.6%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가지 항목 모두 50% 미만의 매우 낮은 적정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안내시설의 항목별 설치율은 다음 [표 7]과 같다.

점자블록의 적정설치율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설치율 또한 29.6%로 동일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설치된 모든 점자블록이 표준형 점자블록을 사용하는 등 적정하게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점자블록 항목의 경우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가장 빈번히 접하게 되는 편의시설이자 비장애인에겐 인지도가 높은 편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29.6%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어 설치되어야 할 곳에 설치되지 않은 점자블록의 수가 아직도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보 및 피난설비의 경우 적정설치율이 9.6%로 가장 낮게 평가된 반면 설치율이 59.6%로 가장 높게 평가되어 50.0%의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설치된 경보 및 피난설비의 대부분이 부적정하게 설치된 것을 의미한다.

[표 7] 공연장의 안내시설 설치율

구분		전체 시설 수	설치 수	적정 설치 수	설치율 (%)	적정 설치율 (%)
점자블록	접근로 연속설치	27	7	7	25.9	25.9
	표준형 사용	27	9	9	33.3	33.3
	소계	54	16	16	29.6	29.6
유도·안내설비	유도·안내장치 설치	26	5	5	19.2	19.2
	점자부분 높이	26	4	4	15.4	15.4
	소계	52	9	9	17.3	17.3
경보·피난설비	시각장애인 설비	26	15	2	57.7	7.7
	청각장애인 설비	26	16	3	61.5	11.5
	소계	52	31	5	59.6	9.6
총계		158	56	30	35.4	19.0

5) 기타시설

기타시설의 항목별 설치율은 다음 [표 8]과 같다. 접수대 45.2%, 관람석 및 열람석 26.6%, 매표소·판매기·음료대 19.6% 순의 적정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관람석의 접근가능한 위치 항목과 관람자가 무대로 오르는 경사로 항목은 3.7%의 매우 낮은 적정설치율을 보이고 있어 공연장 내부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접수대의 경우 설치율 또한 타 항목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로 평가되고 있으나 접수대 높이 및 깊이가 적정하게 설치된 곳이 D시설 1개소에 불과하여 관람자 동선의 초기행태인 접수대에서부터 장애인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8] 공연장의 기타시설 설치율

구분		전체 시설 수	설치 수	적정 설치 수	설치율 (%)	적정 설치율 (%)
관람석·열람석	접근가능 위치	27	15	1	55.6	3.7
	휠체어사용자용 좌석 수	27	17	15	63.0	55.6
	유효바닥면적	27	11	9	40.7	33.3
	장애인석 분산배치	27	11	11	40.7	40.7
	열람석높이·하부깊이	22	9	8	40.9	36.4
	공연자동선 무대경사로	27	4	4	14.8	14.8
	관람자동선 무대경사로	27	2	1	7.4	3.7
소계	184	69	49	37.5	26.6	
접수대	접근가능 위치	21	19	18	90.5	85.7
	높이·하부깊이	21	4	1	19.0	4.8
	소계	42	23	19	54.8	45.2
매표소·판매기·음료대	매표소높이·하부깊이	24	5	3	20.8	12.5
	판매기버튼높이	17	6	0	35.3	0.0
	음료대높이	15	10	8	66.7	53.3
	소계	56	21	11	37.5	19.6
총계		282	113	79	40.1	28.0



(B시설) 접수대 높이 부적정, (H시설)매표소 하단 높이 및 하부깊이 미확보

[그림 4] 공연장의 기타시설 주요현황

3.3 서비스 영역의 정당한 편의제공 현황 분석

공연문화시설 서비스 영역의 정당한 편의제공율은 다음 [표 9]와 같다. 인적서비스 적정제공율¹¹⁾의 경우 42.6%로 기타 공연장에서의 정당한 편의 항목에 비해 높게 평가되긴 하였으나, 3개의 시설만이 장애인 요청 시 수화통역센터와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대부분의 공연장에서 인적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기타 공연장에서의 정당한 편의 항목의 경우 11.1%의 저조한 적정제공율을 보이고 있어 공연관람문화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청시스템의 경우 S시설에서 유일하게 제공되고 있어 3.7%의 적정제공율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청각장애인의 공연관람을 위해 보청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점자공연책자의 경우 C시설에서 유일하게 제공되고 있어 3.7%의 제공율¹²⁾을 나타내고 있으나, 미흡한 점이 나타나 적정제공율에서는 0%로 평가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공연문화 조성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9] 공연장의 정당한 편의제공율

구분		전체 시설 수	제공 수	적정 제공 수	제공율 (%)	적정 제공율 (%)
인적 서비스	보조인력	27	20	20	74.1	74.1
	수화통역사	27	3	3	11.1	11.1
	소계	54	23	23	42.6	42.6
공연장 정당한 편의 (기타 서비스)	보청시스템	27	1	1	3.7	3.7
	점자공연안내책자	27	1	0	3.7	0.0
	화면해설서비스	27	3	3	11.1	11.1
	입장권할인서비스	27	17	2	63.0	7.4
	휠체어대여서비스	27	11	11	40.7	40.7
	인터넷예매서비스	27	13	1	48.1	3.7
소계	162	46	18	28.4	11.1	
총계		216	69	41	31.9	19.0

11) 산출식: 적정제공율(%) = 적정제공수/전체시설수 × 100

12) 산출식: (단순)제공율(%)

= 제공수(적정제공수+미흡제공수)/전체시설수 × 100

3.4 분석의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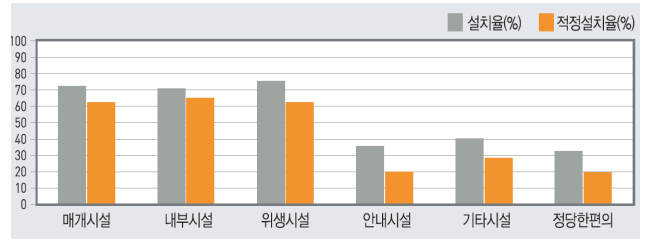
이와 같이 문화시설 중 27개의 공연장을 대상으로 편의 시설 설치실태 및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를 살펴본 결과 설치·제공율이 61.8%, 적정설치·제공율이 51.9%로 나타났다. 설치·제공율은 위생시설 74.9%, 매개시설 72.1%, 내부시설 70.5%, 기타시설 40.1%, 안내시설 35.4%, 정당한 편의 31.9% 순으로 나타났으며, 적정설치·제공율의 경우 내부시설 64.9%, 위생시설 62.4%, 매개시설 62.2%, 기타시설 28%, 안내시설 및 정당한 편의 19%의 순으로 나타났다.

내부시설의 경우 타 편의시설 종류에 비해 적정설치율이 64.9%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위생시설은 설치율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면대의 적정설치율이 낮게 평가되는 등 적정설치율이 다소 낮게 평가되어 개선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안내시설과 더불어 공연장 서비스 영역의 정당한 편의제공율이 가장 낮게 평가되어 장애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및 입장권할인 서비스 등의 확충이 이루어져 장애인등의 공연관람 문화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표 10] 공연장의 편의제공 실태 종합

구분		전체 시설수	설치·제공수	적정 설치·제공수	설치·제공율 (%)	적정 설치·제공율 (%)	
시설	매개 시설	접근로	217	178	156	82.0	71.9
		주차구역	150	87	77	58.0	51.3
		높이차이제거	27	19	12	70.4	44.4
		소계	394	284	245	72.1	62.2
	내부 시설	주출입구	108	83	78	76.9	72.2
		일반출입구	181	128	119	70.7	65.7
		복도	200	155	144	77.5	72.0
		계단	155	74	63	47.7	40.6
		경사로	10	5	4	50.0	40.0
		승강기	138	113	106	81.9	76.8
		소계	792	558	514	70.5	64.9
	위생 시설	대변기	337	256	225	76.0	66.8
소변기		48	30	27	62.5	56.3	
세면대		54	43	22	79.6	40.7	
소계		439	329	274	74.9	62.4	
안내 시설	점자블록	54	16	16	29.6	29.6	
	유도·안내설비	52	9	9	17.3	17.3	
	경보·피난설비	52	31	5	59.6	9.6	
	소계	158	56	30	35.4	19.0	
기타 시설	관람석·열람석	184	69	49	37.5	26.6	
	접수대	42	23	19	54.8	45.2	
	매표소·판매기·음료대	56	21	11	37.5	19.6	
	소계	282	113	79	40.1	28.0	
서비스	인적서비스	54	23	23	42.6	42.6	
	공연장 정당한 편의	162	46	18	28.4	11.1	
	소계	216	69	41	31.9	19.0	
총계		2281	1409	1183	61.8	51.9	



[그림 5] 공연장의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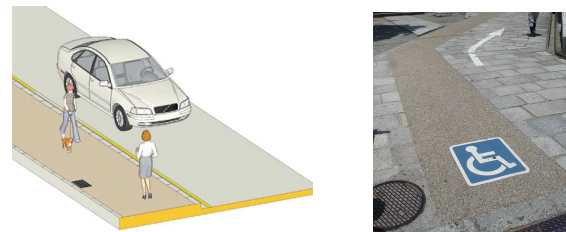
4. 정당한 편의제공 개선방안

본 장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공연문화시설의 정당한 편의제공 현황에 따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물 및 서비스 영역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1 시설영역의 정당한 편의제공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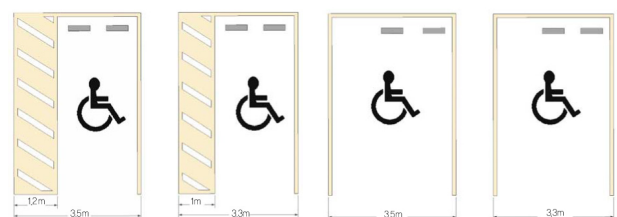
1) 매개시설

공연시설로의 주출입구 접근로는 차도와 분리되어 안전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매우 낮은 적정설치율로 조사된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부터 공연시설 출입구까지의 경로 또한 1.2m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한 보행 안전통로로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6]참조)



[그림 6] 보차가 분리되는 보행안전통로의 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휠체어사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동차문을 활짝 열고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권장하는 치수는 3.5m이상(주차폭 2.3m+통행로 1.2m)이다. 따라서 주차구역의 폭은 최소한 3.3m이상(주차폭 2.3m+통행로 1.0m)이어야 한다. ([그림 7]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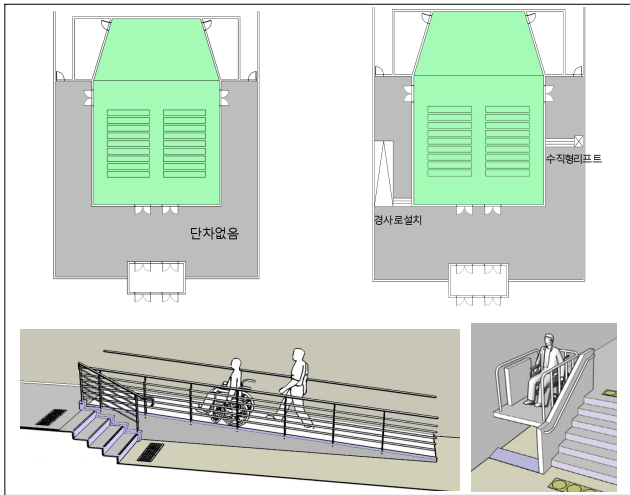
[그림 7]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

만약 기계식주차장만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자주식주차장을 확보하거나 기계식주차장의 대기주차공간 등을 활용하도록 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음을 장애인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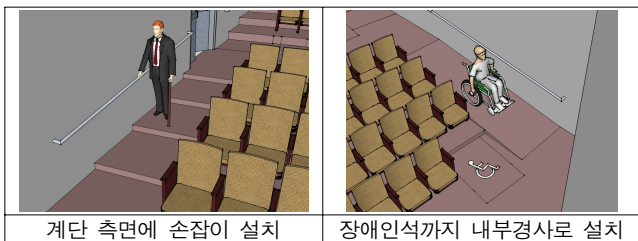
낮은 적정설치율로 조사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항목의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계단이 없는 경우, 출입구 문 앞에 단차는 2c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또한 계단이 있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단차를 제거할 수 있으며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경사도는 1/12이하로 하여야 하며 손잡이 설치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까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할 경우에는 수직 혹은 경사형리프트의 규정에 맞추어야 한다.

2) 내부시설

관람객 동선 및 공연자 동선의 복도(통로)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 등으로 높이차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복도의 단차 제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도 기울기를 1/12이하로 완만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단차가 0.15m 이상일 경우에는 양쪽에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바닥면은 미끄럽지 않게 설치하여야 한다.([그림 8]참조)



[그림 8] 내부 통로의 단차제거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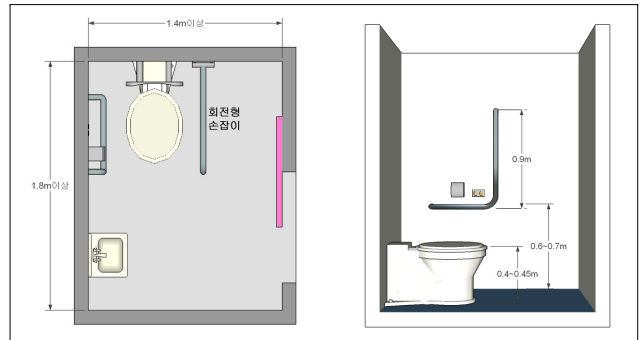
[그림 9] 공연장 내부 통로

공연장 내부의 통로는 어두운 공연장 내에서도 계단의 끝이 잘 보일 수 있는 색상으로 계단코를 설치하거나 계단을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약한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통로가 경사로일 경우 경사로의 기울기는 1/12이하로 하여야 하며, 벽면에는 손잡이를 설치한다. ([그림 9] 참조)

3) 위생시설

휠체어사용자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별도의 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으나, 가능하면 일반화장실 내부의 일반 대변기칸막이 중 하나를 장애인용 대변기칸막이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변기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옮겨 앉기 위해서는 대변기 한쪽 측면의 손잡이가 반드시 회전형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그림과 같이 대변기 측면에 0.75m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면으로 접근하여 대변기에 앉기 위해서는 대변기 전면에 1.4m×1.4m의 활동공간이 필요하다.



[그림 1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대변기 칸막이

4) 안내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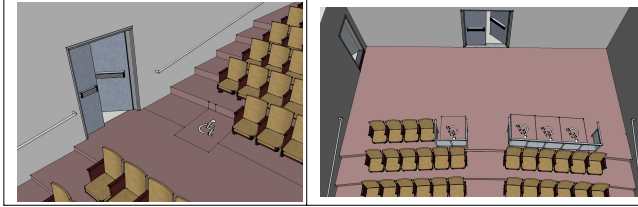
시각장애인이 눈으로 공연을 볼 수 없더라도 공연의 관람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되므로 시각장애인이 공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공연장에는 점자공연안내책자 또는 점자브로셔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막해설 서비스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청각장애인의 경우 공연내용을 자막으로 안내하면 공연자의 대사를 이해할 수 있어 공연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청각장애인을 위한 진동좌석을 설치하여 소리를 진동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청각장애인의 문화 체험의 서비스를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그림 11]참조)



[그림 11] 자막해설 서비스

5) 기타시설

공연장내 장애인용 관람석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피난 경로를 반드시 확보한다. 또한 이러한 피난 경로에 대한 위치 표시를 명확하게 해준다. 장애인용 관람석으로부터의 피난경로는 휠체어의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바닥의 단차를 두지 않으며 경로상의 충분한 유효폭을 확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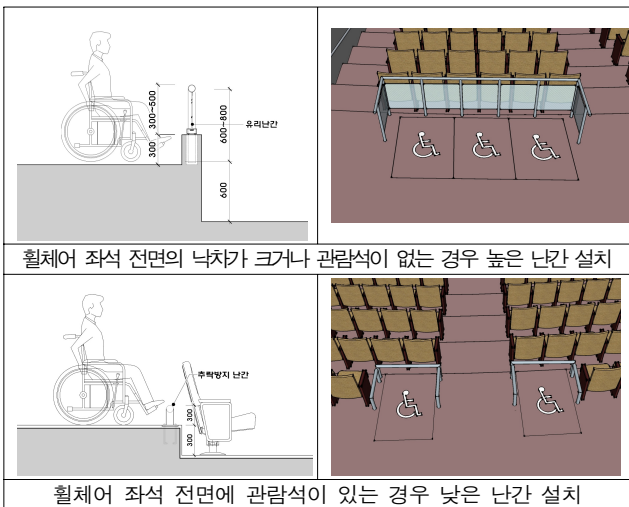


[그림 12] 비상상황을 대비한 출입문 근접 위치의 장애인석 확보 예

관람석은 휠체어사용자와 보조인 또는 동행인과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통로에 근접한 좌석을 휠체어용 관람석으로 설치하면 유리하다. 또한 가변형 좌석을 설치하면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지 않는 공연의 경우 일반적으로 활용하다가 장애인이 동행인과 함께 오면 나란히 함께 관람할 수 있으므로 편리하다. 휠체어가 정차할 수 있도록 빈공간을 확보하여 장애인용 관람석을 확보한 유형의 경우에도 일반좌석과 나란히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림 13]참조)



[그림 13] 휠체어사용자용 관람석 확보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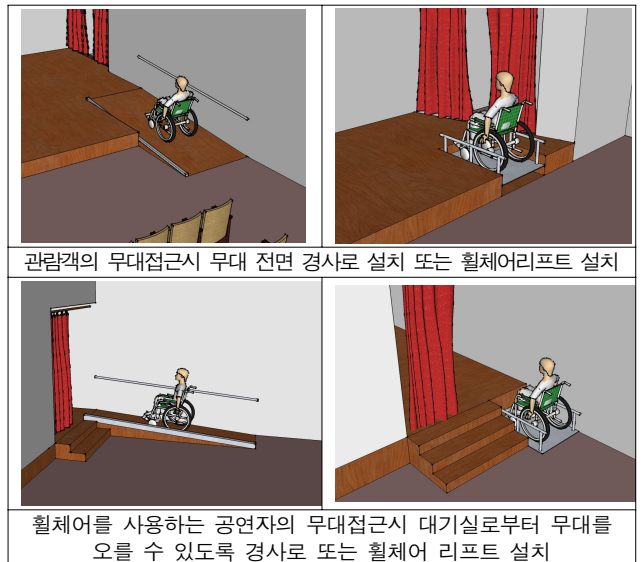


[그림 14] 장애인용 관람석 난간 설치 예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에서 휠체어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턱이나 난간 등의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그림 14]참조). 이때 추락방지 핸드레일의 높이는 시야를 가리지 않는 0.3m~0.8m 정도로 한다. 휠체어사용자 좌석공간 전면의 낙차가 크고 전면 좌석이 없는 경우 휠체어의 추락이 우려되며 휠체어사용자의 심리적 불안감이 클 수 있으므로 0.6~0.8m내의 높이의 핸드레일을 설치하며, 휠체어사용자 좌석공간 전면에 좌석이 설치된 경우 추락의 우려가 적으므로 0.3m 내외의 낮은 난간을 설치할 수 있다.

공연자 및 관람자동선에서의 무대 접근을 위한 경사로 항목은 모두 매우 낮은 적정설치율로 조사되었는데, 이를 개선할 때 공연장의 크기 및 형태에 따라 무대에 오르는 경사로를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그림 15]참조) 무대로부터 관람석 방향으로 경사로가 길게 설치되는 경우에는 경사로 주변에 휠체어 이동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람석의 일부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무대가 높아 긴 경사로를 설치하기에 공연장 내부가 협소하며, 다수의 휠체어사용자가 동시에 무대로 이동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내부 유효바닥면적이 폭 0.9m이상, 깊이 1.2m이상의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연자가 휠체어사용자인 경우 무대 옆 또는 뒤의 준비실로부터 무대로 오를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때에도 경사로 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무대의 높이차이를 제거할 수 있다.



[그림 15] 무대접근을 위한 높이차이 제거의 예

시각장애인이 공연하는 무대에는 벽면 돌출물이나 무대상부(최소 2.1m이상)의 장애물이 제거되어야 시각장애인이 위험을 느끼지 않고 공연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공연하는 무대의 경우 전후면과 측면 바닥에는

재질을 달리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이를 감지하여 공연을 위한 이동 도중 무대 아래로 추락 또는 벽면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그림 16]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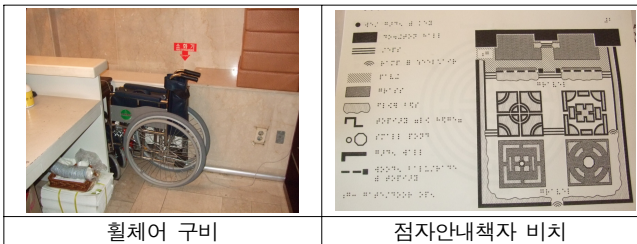


[그림 16] 시각장애인 공연 무대의 바닥 예

4.2 서비스 영역의 정당한 편의제공 개선방안

공연문화시설에서는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하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각장애인이 입장권을 예매하거나 구매할 수 있도록 매표소 담당자가 수화·구화·필담 가운데 1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교육 및 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매뉴얼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수화통역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인적 편의제공이 어려운 경우 지역의 관련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인적 편의제공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¹³⁾ 또한 공연문화시설내에 장애인의 비상대피를 위한 매뉴얼을 비치하고, 비상대피를 지원해 줄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의 공연을 관람하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림 17] 서비스 영역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비치용품의 예

5. 결론

본 연구는 문화시설 중 공연시설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영역에 포함되는 편의시설 및 서비스 영역의 편의제공에 관한 실태분석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3)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인적 편의제공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1

첫째, 시설물 영역의 접근과 관련하여 관람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지내의 접근로를 통과하여 공연장 내부의 좌석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단차제거 및 유효폭과 기울기 등을 고려한 보행안전통로의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공연장 내부에서 공연을 관람하기 위한 관람석은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위치에 장애인용 좌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동행인과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공연을 충분히 관람하기 어려운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영역 측면의 편의제공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으로는 장애유형별로 대체할 수 있는 감각을 최대한 이용(청각장애인의 경우 시각화 자료 및 진동 등, 시각장애인의 경우 청각 및 촉지자료 등)할 수 있도록 설비 및 인적서비스 등의 편의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장애인이 관람자가 아닌 공연자로서 공연에 참가할 수 있으므로 공연자 대기실로부터 무대에 이르기까지의 이동과 접근, 그리고 공연행위까지 적절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공연문화시설에서 시설물 영역과 서비스 영역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현황을 분석한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다루지 못한 전 시관, 도서관 등과 같은 문화시설을 포함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하는 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각급 교육시설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개선대안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1. 김영은 외, 공연시설에서의 장애인 객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7.
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2010
3. 오찬욱 외, 지역문화시설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성 평가연구, 한국 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10.
4. 이수용 외, 지역문화시설의 지체장애인 동선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 의료복지시설학회지, 2005.
5. 한국장애인개발원, 2008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09
6. 한국장애인개발원, 문화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매뉴얼, 2011.
7.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인적 편의제공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1.
8.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편의시설 표준상세도, 보건복지부, 2011

접수 : 2012년 3월 31일

1차 심사 완료 : 2012년 04월 17일

게재확정일자 : 2012년 05월 08일

3인 익명 심사 필